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126
----------	-------

발의연월일 : 2025. 11. 11.

발 의 자 : 김소희 · 김미애 · 이양수
임이자 · 강승규 · 김예지
김상훈 · 성일종 · 조정태
안상훈 · 엄태영 · 박수민
김기웅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하지만, 침해사고 미신고 제재가 과태료 3천만원 이하에 불과하고, 신고를 늦게 해도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어 사업자가 침해사고 신고를 지연하거나 은폐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피해 확산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침해사고를 즉시 신고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기본 과태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신고일까지의 지연 일수당 부과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 신속한 침해사고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7조 신설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제6호의6을 삭제하고,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과태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를 즉시 신고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 과태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신고일까지의 지연 일수당 부과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기본액, 지연 일수당 가산액 및 총액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1. ~ 6의5. (생 략)	1. ~ 6의5. (현행과 같음)
<u>6의6.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u>	<u><삭 제></u>
6의7. ~ 12. (생 략)	6의7.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77조(과태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를 즉시 신고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과태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신고일까지의 지연 일수당 부과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과태료를 부과·징

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기
본액, 지연 일수당 가산액 및
총액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